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등 근로자(하수·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채용 공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 치수과에서 하수·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



1. 채용분야 및 모집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근무부서 (근무장소)	담당업무
하수·하천 시설물 유지관리	공무원 등 근로자	1명	치수과 (금천구 관내)	· 하수·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· 하수·하천 관련 민원처리 · 수해예방 및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근무 등

※ 신규 채용 후, 3개월 간 수습 기간을 두어, 수습기간 동안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

2. 응시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 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채용결격사유) 및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■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」

제12조(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■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결격사유 조회 :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://www.share.go.kr/>) → e하나로 민원

■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■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(정년)

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.

○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
응시자격 요건	-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 (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) -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(업무 특성상 수동작업차량 운전 가능자)
우대요건	- 공고일 기준 금천구민 및 유사 근무 경력자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격요건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.

3. 근무조건 및 임금

○ 임 금 : 1호봉 기준 25,821,360원(2023년도 공무원 통상임금 기준)

※ 초과 및 야간수당 별도 지급, 4대 보험 의무 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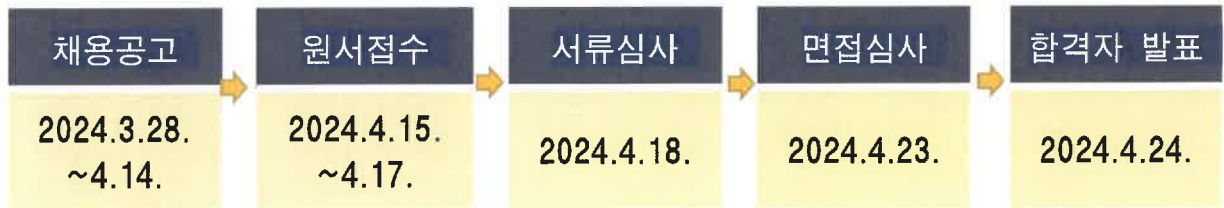
○ 근무시간 : 주5일(월~금), 1일 8시간(09:00~18:00) ※ 휴게시간 1시간 포함

○ 근무장소 : 금천구 관내

4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24. 3. 28. ~ 4. 14. (18일간)
- 접수기간 : 2024. 4. 15. ~ 4. 17. (3일간)
- 접수방법 : 방문, 등기, 이메일
 - 방문, 등기 : 금천구청 10층 치수과 (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, 금천구청)
 - ※ 방문접수의 경우 월~수요일, 09:00~18:00 접수
 - 이메일 : sulily92@geumcheon.go.kr
- 유의사항
 - 방문, 등기, 이메일 모두 **2024. 4. 17. 18시까지 도착서류에 한해 인정됨**
 - 이메일 접수의 경우 자필 기재사항(서명 등)은 추후 보완 예정

5. 채용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

6. 선발방법

- 서류심사 : 가산점 분류표에 의거 개인별 점수부여(10점)

항 목	기간 및 면허증	가산점	증빙서류	비 고
금천구 거주기간 (최대3점)	5년이상	3점	정보동의서	계속거주
	5년미만	1점		
상·하수도 분야 경력 (최대7점)	5년이상	7점	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담당자 직인 및 날인표시
	3년~5년미만	5점		
	2년~3년미만	4점		
	1년~2년미만	3점		
	1년미만	1점		

※ 경력 가산점 :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며, 연속된 기간이 아닌 10년 이내 근무경력 합산 가능

○ 체력검증 : 직무수행 관련 기초체력 검증 심사(30점)

- 대상 : 서류심사 합격자
- 일시 및 장소 : '24. 4. 23.(화) (10:00), 안양천 내 다목적광장 ※점심식사 미제공
- 평가방법 및 점수 부여 : 5kg 모래주머니를 양손에 들고 50m 반환점(측정거리 :100m)돌아서 도착시간 측정 후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

○ 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자세 및 적격성 등 종합평가(60점)

- 대상 : 서류심사 합격자
- 일시 및 장소 : '24. 4. 23.(화) (14:00), 금천구청 치수과 풍수해안전대책본부(10층)
- 평가방법 및 점수 부여 : 5등급 척도로 구성된 4개 평가항목의 면접심사표에 의거 면접자 개인별 평가 실시

○ 합격자 결정

- 일 시 : '24. 4. 24.(수)
 - 장 소 :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
 - 방 법 : 체력검증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,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- 선발인원 : 총 1명
 - 동점자가 있을 경우 : 1순위 주민등록상 금천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,
2순위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자 순으로 선정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채용됨.
- ※ 최종합격자 공고는 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순위명부에 의거 차순위자 순으로 고용

7. 제출서류

- ① (필수) 응시원서 1부 ⇨ 자필 또는 한글·워드 작성
- ② (필수) 이력서 1부 ⇨ 자필 또는 한글·워드 작성
- ③ (필수) 자기소개서 1부 ⇨ 자필 또는 한글·워드 작성
- ④ (필수) 운전면허증(1종 보통이상) 사본 1부
- ⑤ 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⇨ 자필 작성
- ⑥ (필수) 구직필증 1부
 -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(무료)
 - 온라인 발급 : 금천구 일자리센터(<http://job.seoul.go.kr/geumcheon>)
- ⑦ (필수)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- ⑧ (해당자에 한해) 이력서 기재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1부
 -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
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경력(재직)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
8. 기타(유의사항)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

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30일 이내에(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중 부서 여건에 맞춰 변경)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
-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/2배수(부서 여건에 맞춰 변경)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건강진단서 제출(국·공립병원 또는 보건소 발행)
 - 진단서 제출 결과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및 채용 취소

9. 공고 관련 문의처

- 금천구청 치수과 하수팀 ☎ 02) 2627- 1844